2024 한국금융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방안 연구

- 한국과 일본의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2024. 11

조영석(목포대), 정세영(목포대), 조태진(안진회계법인)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중소기업 승계 제도

Ⅳ. 가업상속공제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 및 창업 1세대 기업의 가업상속 문제가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소멸예상 사업체 수 32.5만개, 근로자 약 307만명의 실직, 매출 감소 약 794조원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 발생 예측(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 원활한 가업승계는 국내외적으로 장려되고 있으며, 정부의 투자 장려는 기업성장 등으로 고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업 업력이 증가할수록 법인세 담세능력이 최대 32배 높아지고, 고용창출 능력은 11배 증가하며 그 영향으로 매출액과 자산이 급증하여 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도 높아짐(중소기업중앙회, 2022)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사업승계 제도와 비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비교 분석한 후, 지원제도의 핵심이 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심층 분석

□ 대상 기간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본격 도입된 2008년부터 2023년 기간까지 문헌 비교연구 방법으로 진행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20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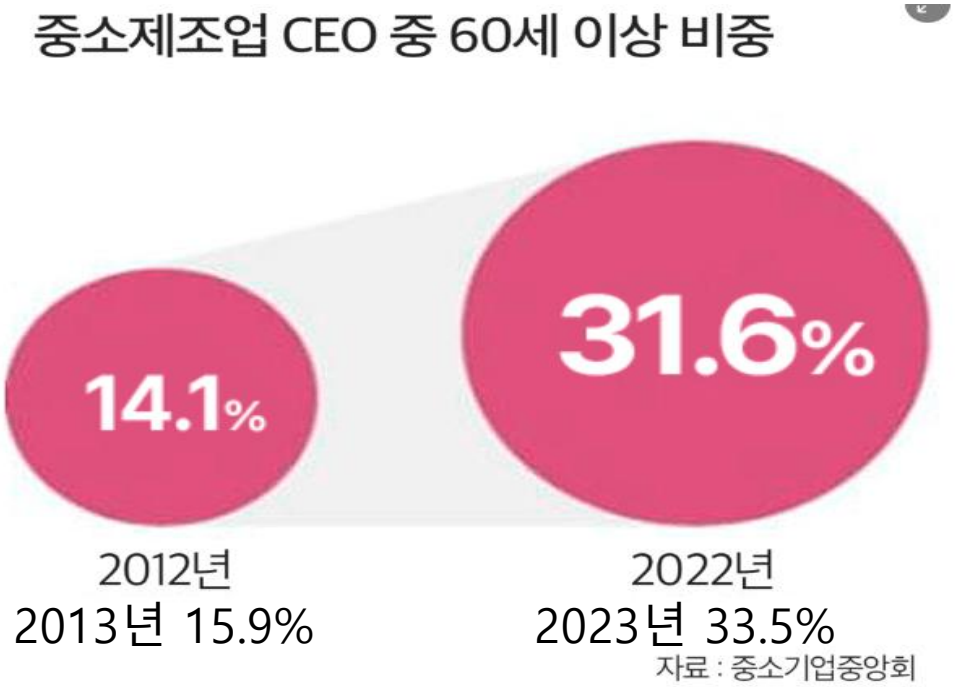

□ 2024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 제정을 본격 추진

- 가업을 승계하지 못해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업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이 35만여개 달하는 수준임.
- 일본의 경우 친족 승계 실패로 흑자 폐업한 중소기업이 60여 만개로 추정 (일본 2020년)

일본이 2008년 제정한 ‘中쇼경영승계원활화법’을 바탕으로 중기벤처부에서 특별법을 준비 중. 일본은 특별법을 근거로 △납세유예 특례 △금융지원 △업종별 승계 요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2018년엔 ‘사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증여세를 100% 면제도 적용하고 있음.

자료 : 2024.11.10 매일경제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1)

1. 상속증여세제와 가업상속

□ 상속증여세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생존해 있는 증여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vs 사업승계 < 기업승계

○ 가업승계(家業承継)란 기업의 경영권과 자산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가족 간 이전에 중점. 가업상속은 가업승계의 한 방법으로, 상속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과 자산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

○ 일본에는 회사의 계속사업에 초점을 두어 '사업승계(事業承継)'라고 부르며 경영권의 이전 대상을 가족, 종업원, 일반인까지 포함하여 후계자에게 승계하는 경우에 혜택을 부여

□ '기업승계'는 기업의 경영 지배권이 안정적으로 후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가업승계', '경영승계' 등으로 혼용됨.

2. 상속과세제도

□ 상속과세의 논거

○ 상속과세의 이론적 정당성은 응능부담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소득재분배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찬반 논란

○ 찬성 :

-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기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정지선 2020)
- 고용 유지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용 안정성을 제고(김석준, 2016)

○ 반대 :

-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며, 실효성이 낮은 한편으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 (박훈, 2020)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2)

3. 가업상속공제제도

1) 국내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 상속세 1987년 상속세특례제도를 시행한 이후, 2007년 대폭 개정하여 2008년부터 본격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적용 요건

□ 가업상속공제제도

○ '가업상속공제제도'란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 기업, 피상속인, 상속인에 대해 각각의 해당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해당 금액을 인정해 주고 있어서 매우 엄격한 조건을 적용

〈표 2-2〉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 건	기 준	상세 내용
기업	계속경영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모두 충족)	-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장 독립성 기준을 충족 - 매출액 평균금액(3개 연도) 5천억원 미만 -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심사 :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을 승계하여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나 이	- 18세 이상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및 부득이한 사유시 예외규정 있음)
	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배우자	- 배우자가 이상의 요건 충족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봄

*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정리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3)

3. 가업상속공제제도 – 계속

□ 국내 가업승계 지원 정책은 친족승계 중심의 상속·증여세 혜택 중심이었으나 최근 기업의 지속 성장, 자본시장 활용 등을 반영한 세법 개정 및 M&A형 기업승계 방식 지원 계획 발표 등 지원 방안이 확대되고 있음.
- 2008년부터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완화를 중심으로 가업승계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며, 2023년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로 세제 혜택 확대

〈표〉 가업승계 지원 세제 제도

구 분	주요 혜택
가업상속공제제도(상증법 §18의2)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요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조특법 §30의6)	–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한도 요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상증법 §71)	– 총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상증법 §72의2, 조특법 §30의7)	– 가업재산을 상속 · 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 · 상속 · 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 · 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자료: 국세청

〈표 2-4〉 2023년도 가업승계지원 개정 내용

구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 원 → 5천억 원 미만)	
공제(적용)한도 증가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공제(적용)한도: 200억 원 → 300억 원 가업영위기간: 20년 이상 ~ 30년 미만 → 공제(적용)한도: 300억 원 → 400억 원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 공제(적용)한도: 500억 원 → 600억 원	
피상속인(수증자) 지분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 50% → 40%이상 (상장법인 30% → 20%이상) 10년 이상 보유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 이상 & 7년 통산 100% 이상 →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대표취임) 5년 → 3년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 40% 이상 처분 제한	(대표 유지) 7년 → 5년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10년 또는 20년 → 모두 20년	5년(현행유지)
납부유예제도 신설	중소기업의 가업재산을 양도 · 상속 ·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의 납부를 유예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4)

3. 가업상속공제제도 – 계속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사 가장 높은 상속세 세율(최대주주 할증과제 적용시 60%)을 적용받고 있으며, 평균 27.1%의 2배가 넘는 고율을 적용

□ 가업상속공제 결정 현황을 보더라도 연평균 건수는 100건에 미달하고 있으며, 독일은 건수도 100배, 금액도 120배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음.

〈그림 2-2〉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직계비속 상속 기준)

• 자료 :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EY), Worldwide Tax Summaries(PWC) 등

〈표 2-6〉 한국과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결정 현황 비교

구 분	한 국		독 일	
	건 수	공제금액 (백만원)	건 수	공제금액 (1,000유로)
2016년	76	318,378	10,636	21,424,522
2017년	91	222,598	9,260	20,387,105
2018년	103	234,421	8,773	11,634,555
2019년	88	236,343	9,263	12,022,511
2020년	106	421,049	12,043	7,688,724
2021년	110	347,505	11,874	24,759,638
평 균	95.7	296,716	10,308	16,319,509

자료: 국세통계연보, Finanzen und Steuern(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 자료 : 임동원(2023)에서 재인용.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5)

3. 가업상속공제제도 – 계속

□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 실적도 증가하고 있으나 건수 및 금액은 우리나라 총 세수의 2%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실정임.

가업상속공제제도 위반 추징 건수 및 추징세액

(단위 : 건수, 억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추징액	건	추징액	건	추징액	건	추징액	건	추징액
자산 처분	82.9	5	40.1	1	1.6	1	31.7	2	8.0	3	1.5
가업 미종사	229.9	3	6.5	7	135.0	4	11.4	1	0.4	11	76.5
고용요건 위반	85.2	12	17.0	6	23.4	3	17.3	4	27.0	2	0.5
당초요건 미비	18.5	3	12.9	1	3.7	-	-	1	1.9	-	-
합계	416.5	23	76.5	15	163.7	8	60.4	8	37.3	16	78.6
결정 대비 추징건수비중	14.9%	28.7%		20.0%		9.0%		8.1%		12.3%	

자료 : 정세영(2024) 국세통계, 日刊 NTN (http://www.intn.co.kr) 2024.01.29.

〈표 2-10〉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실적

(단위: 건, 백만원)

연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건수	공제총액	건당 평균공제액	건수	과세특례 총액	건당 평균특례액
2014	68	98,608	1,450	106	139,329	1,314
2015	67	170,593	2,546	76	107,798	1,418
2016	76	318,378	4,189	130	202,257	1,556
2017	91	222,598	2,446	173	263,596	1,524
2018	103	234,421	2,276	204	311,920	1,529
2019	88	236,343	2,686	172	237,280	1,385
2020	106	421,049	3,972	222	316,951	1,428
2021	110	347,505	3,159	267	402,524	1,508
2022	147	342,952	2,333	410	745,782	1,819

자료 : 2023년 국세통계연보(2024)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6)

4.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1) 국내의 선행연구

□ 가업승계의 효과에 관한 연구

□ 가업승계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가업승계의 컨설팅에 관한 연구

2) 해외의 선행연구

□ 가업상속과제제도의 효과 및 영향 분석

□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기업가치 및 지배구조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3) 본 연구의 차별성

○ 첫째, 국세청의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제도 비교 분석

○ 둘째, 2020년 이후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조문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차이점을 분석

○ 셋째,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해외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그 차이점과 시사점 도출

○ 넷째,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

한국과 일본의 최근 동향(1)

〈그림 1〉 선호하는 가업승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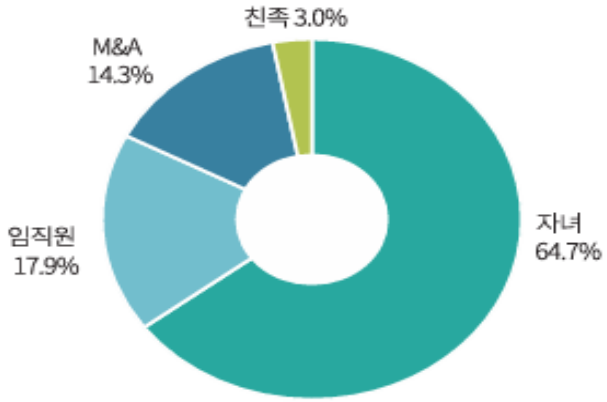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그림 2〉 후계자가 없는 기업 중 향후 기업처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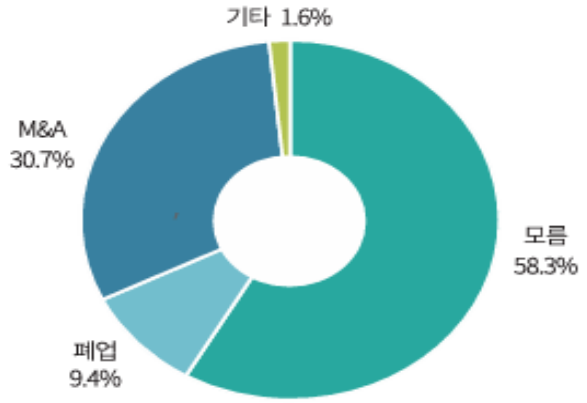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최근 고령화 심화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 경영승계 이슈가 대두되면서 기존의 친족승계 중심의 가업 승계 방식에서 친족외 승계 및 M&A를 통한 기업승계 등으로 가업승계 방식이 다각화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가업승계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 경영자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영자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2024,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자 평균 연령은 '22년 55.3세로 '12년 51.3세에서 4세 증가, 60세 이상 경영자는 '22년 33.5%로 '12년 14.1%대비 2.3배 이상 대폭 증가
- 승계자 부재 문제가 중소기업의 중요한 경영과제로 인식되며 기존의 친족승계 방식과 함께 M&A형 기업승계 등 다양한 가업승계 방식 고려
- 현재 20.4%의 중소기업은 적절한 후계자가 없으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 중 30.7%는 M&A를 고려하고 있고 9.4%는 폐업을 고려
- 자녀승계 선호 기업 중 20.5% 자녀는 가업을 승계받을 의향이 없음

한국과 일본의 최근 동향(2)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 연령분포 및 영업중단 건수(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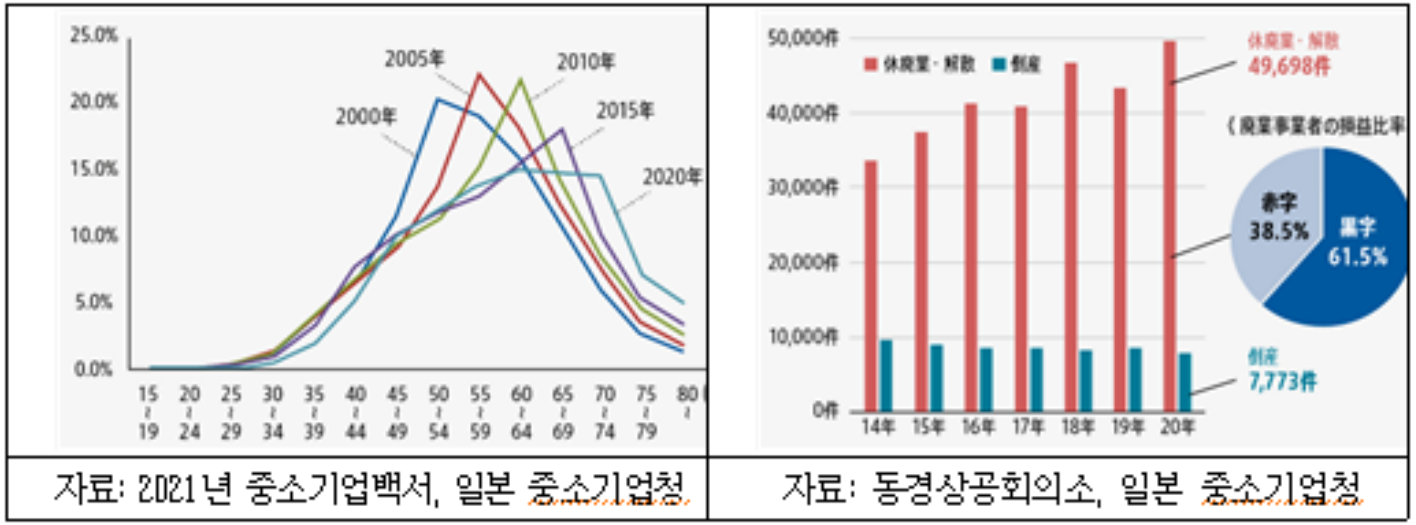

자료: 2021년 중소기업백서, 일본 중소기업청

자료: 동경상공회의소, 일본 중소기업청

일본 중소기업 M&A지원 3대 증권회사의 사업승계 지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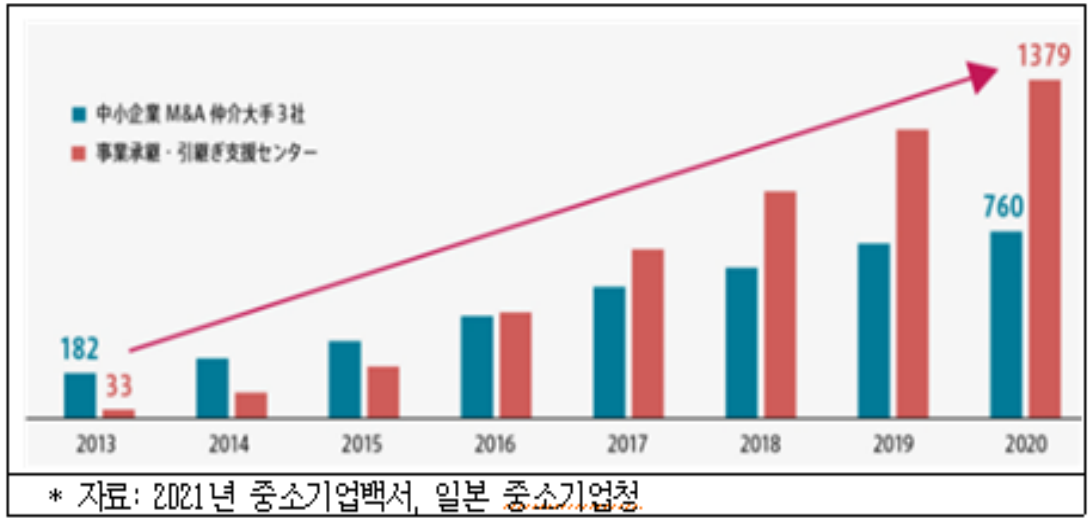

* 자료: 2021년 중소기업백서, 일본 중소기업청

□ 일본은 후계자 부재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가업승계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금융기관,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였고 후계자 부재율 및 흑자기업 폐업률이 감소하는 등의 진전을 보임

- 일본에서는 일찍이 경영자 고령화 심화와 중소기업의 후계자 부재에 따른 흑자기업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이슈화
-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의 연령대는 2005년 50~54세에서 2015년 65~69 세까지 증가
- 2025년 시점에 70세를 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약 60%인 245만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약 절반인 127만명이 후계자 미정인 상태로 전망. 또한 경영자 은퇴에 따른 중소기업의 폐업 급증으로 2025년까지 10년간 고용 약 650만명, GDP 약 22조엔 감소 추정(2017.11, 일본 경제산업성)
-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책금융기관,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추진해 왔으며 2017년 이후 지원 방식을 다각화 및 확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 후계자 부재율은 '23년 54.5%로 '16년 66%에서 11.5%p 감소, 흑자기업 폐업률은 52.4%로 11.6%p 감소

한국과 일본의 최근 동향(3)

□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 성장, 자본시장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가업승계 지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대되어 밸류업 우수기업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를 도입할 예정
- 최대주주등 주식(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에 20% 가산하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는 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에서 17개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을 지정하고 향후 '기업승계 특별법'을 신설하여 M&A형 기업승계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24.4.29, 중소벤처기업부)

-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친족승계 중심의 가업승계 지원 계획을 M&A 등의 기업승계로 확대
- M&A형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중개업체의 연계를 통 해 M&A준비 및 컨설팅부터, M&A 매칭·중개, M&A 후 경영통합의 전 단계 지원 시스템을 구 축할 계획

□ 세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가업승계특별법' 재정으로 M&A 가업승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다 양한 가업승계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M&A형 기업승계 중심으로 가업승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

- '기업승계특별법'에는 기업승계 지원센터 등 물적 인프라와 M&A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특례 혜택 등의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이며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전문 인력을 활용 한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 국내 M&A형 기업승계 수요는 2022년 기준 약 21만개로 추정되며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M&A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소벤처기업부, 24.9.27)

<표 3>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지원제도 요약

○ 가업상속공제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		
혜택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영위기간(10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4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 한도	
요건	피상속인	·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간 보유
	상속인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혜택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120억원 초과분 20%) 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400억원, (30년이상)600억원 한도	
요건	증여자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자녀)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혜택	총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 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요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 납부유예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7)		
혜택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요건	중소기업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혜택	증여세 과세가액(5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 ※ 단,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	
요건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수증자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		
혜택	최대주주로부터 상속·증여받는 경우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 배제	
요건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	

한국의 가업승계와 일본의 사업승계 제도 특징 비교

구분	가업승계(家業承継,) Family Business Succession	사업승계(事業承継,) Business Succession
정의	가족 구성원, 주로 자녀에게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	가족뿐만 아니라 전문경영인 등 제3자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
승계 대상	가족 구성원 (자녀, 친족)	가족 구성원 및 제3자(전문경영인, 투자자 등)
승계 방식	부모에서 자녀로의 세대 간 승계가 일반적	M&A, 매각, 경영권 이전 등 다양한 방식
범위	가족기업에 한정	모든 형태의 기업
목적	기업의 전통과 가치 유지, 가족 내부의 이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의사결정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문화적 특징	가족주의, 혈연 중심의 승계	전문성과 능력 중심의 승계
법적/제도적 지원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 혜택	M&A 지원, 사업승계 컨설팅 등 - 일반적인 기업 M&A 관련 법규 적용
장점	가족 가치와 기업문화 유지, 경영권 분쟁 예방, 상속세 부담 완화	전문성 제고, 외부자원 활용, 기업 성장 기회 확대
단점	경영 능력 부족, 가족 간 갈등 가능성, 상속재산 분할로 기업 경쟁력 약화	기존 기업 문화와의 충돌, 단기적 성과 중심 경영 우려

자료: 한국의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일본의 사업승계 지원제도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Ⅲ. 한국과 일본의 기업승계지원제도 비교 및 시사점(1)

1. 한국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 필요성

○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실효성 문제 대두

- 엄격한 사후 의무요건 미충족으로 약 15% 정도 추징사례 발생

가업상속공제제도 위반 추징 건수 및 추징세액

(단위 : 건수, 억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추징액	건	추징액	건	추징액	건	추징액	건	추징액
자산 처분	82.9	5	40.1	1	1.6	1	31.7	2	8.0	3	1.5
가업 미종사	229.9	3	6.5	7	135.0	4	11.4	1	0.4	11	76.5
고용요건 위반	85.2	12	17.0	6	23.4	3	17.3	4	27.0	2	0.5
당초요건 미비	18.5	3	12.9	1	3.7	-	-	1	1.9	-	-
합계	416.5	23	76.5	15	163.7	8	60.4	8	37.3	16	78.6
결정 대비 추징건수비중	14.9%	28.7%		20.0%		9.0%		8.1%		12.3%	

자료 : 정세영(2024) 국세통계, 日刊 NTN (http://www.intn.co.kr) 2024.01.29.

Ⅲ. 한국과 일본의 기업승계지원제도 비교 및 시사점(2)

2. 가업승계보다 사업승계 지원 정책으로 전환

○ 세제 개편을 넘어선 근본적인 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요건을 중견기업도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가업승계 지원보다 사업승계 지원 정책으로 근본적인 틀이 변화해야

- 후계자의 친족간 요건을 폐지하고 일본처럼 M&A를 통한 사업승계 지원제도를 포함한 사업승계 지원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임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는 법인도 사업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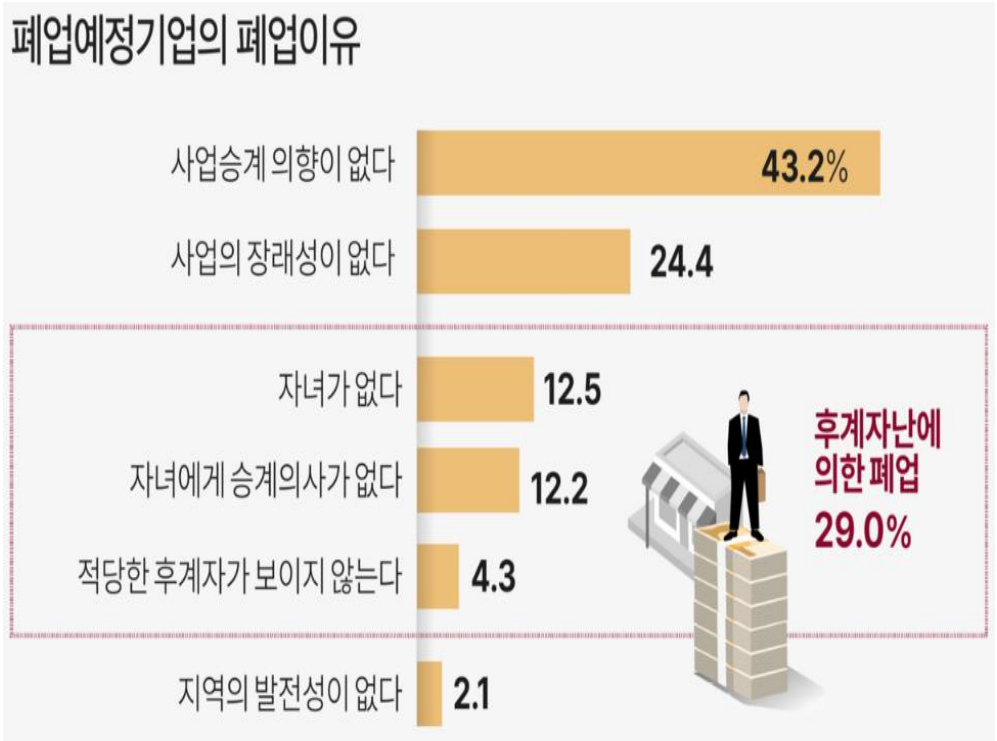

- <우측 그림> 일본의 폐업예정기업의 폐업 이유 (자료: 중소기업뉴스)

Ⅲ. 한국과 일본의 기업승계지원제도 비교 및 시사점(3)

3.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 방안 (일본 사례 참고)

○ 일본은 2018년 사업승계 특례조치 시행 후 사업승계 적용 건수가 크게 증가

- 국내의 경우2023년 납세유예제도 신설 후 점진적 증가 예상. 여전히 까다로운 사후요건 등으로 추가적 개선 조치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 및 국세청의 무료 자문프로그램 및 세무컨설팅 과정 등 세제, 법률상담 서비스 등 제공 (일본의 경우, 한도 제한없이 납세유예제도 실시)

- **일본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 등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
- **일본 중소기업청이 2022년 3월에 개정한 '사업승계 가이드라인' "친족 내 승계 중심을 넘어 종업원 승계와 제3자 승계(M&A)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현 경영자, 후계자 후보, 그리고 지원기관 등이 사업승계 대응에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신 실무 관행 등을 반영하고 한층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개정"**
-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친족 내 승계 비율이 전체의 약 35%까지 감소하고, 친족 외 승계가 65% 이상에 달하고 있음 (중소기업뉴스(http://www.kbiznews.co.kr)**
- **후계자를 결정하고 나고 사업승계가 완료하기까지 후계자로의 이행 기간(후계자의 육성 기간을 포함한다.)은 3년 이상을 요하는 비율이 50%를 웃돌고,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비율도 11.2% 수준**

Ⅳ.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

1. 한국과 일본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비교

1. 적용대상 기업 요건
2. 기업계속 영위기간 요건
3. 피상속인 요건 관련
4. 상속인 요건 관련
5. 가업용 자산의 범위 및 유지 요건 관련
6. 지분유지 요건 관련
7. 근로자 유지 요건 관련
8.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관련
9. 기타 문제점

<표 4-1> 한국과 일본의 가업상속공제제도 항목별 차이점 비교

항목	한국	일본
공식 명칭	가업상속공제제도	비상장주식 등에 관한 상속세 납세유예 및 면제제도
지원 방식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또는 납부유예	상속세 납세유예 및 면제
적용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
업종 제한	적용대상 업종 열거주의 일부 업종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등) 제외	업종 제한 없음 (풍속영업회사, 자산보유형회사 제외)
사업 영위 기간 요건	10년 이상	제한 없음
과세방식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업력에 따라 차등(최대 600억원 한도)	비상장주식 등의 상속세 전액 (한도 없음)
선대경영자 (피상속인) 요건	특수관계인 포함 40% 이상 (상장기업 20% 이상)	회사 대표자 특별관계자와 합쳐 50% 초과 지분 보유 동족 내(후계자 제외) 최대주주
후계자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상속 개시전 임원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 취임 상속개시후 지분 50% 이상 보유하고 최대주주가 될 것
제 3자 승계	원칙적으로 불인정 (자녀 및 그 배우자만 인정)	동일 혜택 적용
사후관리 기간	5년	5년
고용유지 요건	5년 평균 90%	5년 평균 80%
적용취소 부담	추징세액에 이자 가산	이자세 부과 기간 제한 (5년)
사전 승계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600억원, 10% 또는 20% 세율)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전액 납세유예

Ⅳ.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2)

2.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 완화

1. 상속세율의 인하
2.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3. 피상속인 요건 관련
4. 상속인 요건 관련
5. 사업용 자산의 범위 및 유지 요건 관련
6. 지분 유지 요건 관련
7. 근로자 유지 요건 관련
8. 가업 영위기간별 공제한도 관련
9. 기타 문제점

1억 유로 기업상속 시 주요국 상속세 실효세율 추정
(상속가액 대비 세액 비중 %)

한국	남아공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태국	네덜란드
41.0	37.01	34.8	29.9	26.9	23.9	11.0	4.9	3.2

*자료: Global family business tax monitor 2023(KPMG)

Ⅳ.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3)

3.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단점 비교

구분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과세근거	피상속인이 생전에 세계상 우대 등 향유한 세부담 경감분을 정산	상속에 의한 유산취득은 무상소득이며, 상속인의 담세력을 증가시킴
부의 재분배	세대간 공평·격차시정에 초점	세대 내의 공평·격차 시정에 초점
부의 집중 억제 기능	유산분할을 촉진할 유인이 없어 낮음	누진세율의 경우 다수의 상속인들에게 유산을 분할할수록 세부담 감소로 부의 집중억제 기능이 높음
세수와의 관계	세액은 기본적으로 유산에 따라 결정되며, 유산분할이 어떻게 되든 세액은 변화 없어 중립적임	유산분할이 많을수록 세수가 감소, 유산분할에 따른 세부담의 영향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함
세무행정 부담	피상속인의 유산만 조사하여 가벼움	모든 상속인에 대해 그 취득자산을 조사해야 하므로 무거움

* 자료 : 김두복(2017), 저자 수정 보완

OECD 회원국의 상속세 과세 방식

구분		국가
상속·증여세 부과 (24개국)	유산취득세 방식 (20개국)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
	유산세 방식 (4개국)	덴마크, **대한민국**, 영국, 미국
자본이득세 부과 (4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추가소득세 부과 (3개국)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비과세 (7개국)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 자료: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 재작성

Ⅳ.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4.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문제점 및 개선 사항

1. 사전 요건

- 적용대상기업 요건 : 최대주주 지분 10년간 50%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일본과 동일)
- 업종 제한 :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편
- 기업영위기간과 업력별 공제한도 차등 적용 : 가업승계 전 영위기간 축소(승계전 10년 이상 -> 3년), 업력별 차등공제 한도 폐지하고, 1,500억원으로 확대하여 단일화
-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 : 사업용 자산가액의 일정배수(예, 1.5배)로 확대 적용
- 상속인 요건 : 상속인이 가업 종사 또는 전문경영인 고용 시에도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으로 인정

2. 사후관리 요건

- 사업용 자산 유지 요건 : 자산처분이 인정되는 사유 확대 또는 처분 허용비율 완화(예, 5년 이내 50%)
- 업종 유지 요건 : 디지털 전환 등 시대 흐름에 맞게 폐지
- 지분 유지 요건 : 변동 허용비율을 확대(예, ±50%p)
- 근로자 유지 요건 :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로 확대

Ⅴ. 결론 및 시사점

□ 연구 결과 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특히, 일본의 사업승계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가업승계 중심 제도의 개선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을 도출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요건 측면 및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적 차원으로 개선 필요
○ 과세 및 세제 전환 : 유산취득세로 과세 방식 전환, 상속세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부과 등

□ 연구의 시사점

○ 최근 중소기업 경영자 또는 창업 1세대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가업상속 문제의 개선을 통하여 경제활성화 및 고용 지속성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의 한계

○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의 한계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미흡

감사합니다.